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

의안 번호	23-30 관련
----------	-------------

발의년월일 : 2023. 3. 31.

발의자 : 복지도시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지원 중단의 유예기간을 확대하여 시설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, 불필요한 조항 삭제 및 조례 제명을 정비하고자 함

## 2. 수정 주요내용

가. 제8조제1호 중 “3개월”을 “6개월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며, 같은 조 제4호를 제3호로 한다.

나. 별지 서식 신청서 중 “운영 및 지원조례 제5조”를 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”로 한다.

##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8조제1호 중 “3개월”을 “6개월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며, 같은 조 제4호를 제3호로 한다.

별지 서식 신청서 중 “서울특별시 마포구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조례 제5조”를 “서울특별시 마포구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”로 한다.

